공고 제 50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6일

가정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문 *식	문 *식 1970-04-12	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석로 (가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7
함 *자	함 *자 1958-02-22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221번길 (가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7